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24 선고 2024가단527695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10.

판결 선고 2024. 10. 24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16. 12. 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3,711,11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,711,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16. 12. 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.
4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3. 12. 20. 접수 제30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5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 '2023. 12. 18.'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라고 청구하고 있으나

위 날짜는 '2016. 12. 4.'의 오기임이 명백하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정윤주

별지